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##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광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2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15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(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5조)

나. 기금의 회계관련 관계법령 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조문번호를 일치시키고, 기금의 회계관련 법규를 변경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

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현행 조례 제1조, 제4조 및 제5조는 상위법령의 조문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
- 기금의 회계관리를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하는 현행 제6조는 법률의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17. 2. 6.~'17. 2. 12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